

복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20호 2022. 11. 9. (수)

발 령

- 훈령 3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 훈령 347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8

공 고

- 제2022-12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0

공										
람										

발령

○부산광역시북구훈령3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부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청원의 범위는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청원사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심의회 구성·운영 등 청원의 총괄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의 처리는 실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북구청장, 접수된 청원 소관업무 담당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9조제3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의 처리부서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복구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 성 <small>(심의결과 동의)</small>	반 대 <small>(심의결과 반대)</small>	비 고	
위원장					
위원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 검토 내용
-

■ 제·개정(폐지) 이유

청원법령 시행(2021.12.23.)에 따라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복구 청원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나. 청원심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 다. 의견청취 및 참석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발령

○부산광역시복구훈령347호

부산광역시 복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복구청장

부산광역시 복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복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의회”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부산광역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노동자: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제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제5조제5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 편의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 근거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인용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사항 변경

- 방문목적의 구체화로 필요최소한 요금 면제
- 면제대상 선정에 대한 포괄규정 삭제

나. 신규 주차요금 경감사항 추가

다.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및 관련 조례 제명 변경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12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북구 금곡동 55-5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5-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2. 11. 9. ~ 2022. 11. 25.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문화체육과 ☎ 051-309-4062)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http://www.busan.go.kr/build/agora>)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금곡동 53-1번지 일원	425,537.4	-	425,537.4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신설, 폐지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20	주차장	금곡동 55-5 일원	금곡동 55-7	1,017.5	감)678.1	339.4	북구 고시 제2010-28호 (2010. 5. 19)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20	주차장	•A=1,017.5㎡→339.4㎡ (감 678.1㎡)	•문화예술센터 조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주차장 필지 일부를 제척코자 함.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금곡동 55-5 일원	-	증)678.1	678.1	-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신설)사유서

도면 표 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문화시설	•신설 - 위치 : 금곡동 55-5번지 일원 - 면적 : 678.1㎡	•부족한 문화인프라로 인해 문화생활 영위가 저조한 전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지원하고, 문화산업기반 확대(일 자리 창출, 판로 등) 및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도모 코자 함.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55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54-4 일원	814.4	감)814.4	-	북구 고시 제2010-28호 (2010.5.19)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5	사회복지 시설	•폐지 - 위치 : 금곡동 54-4번지 일원 - 면적 : 814.4㎡	•현재 지목에 따른 사용 목적 및 향후 이용계획에 부합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폐지코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및 신설에 한함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	28	5,622.8	4	4	금곡동 55-5 일원	금곡동 55-7	1,017.5	339.4	주차장 (감 678.1㎡)
신설				15		금곡동 55-5 일원		-	678.1	문화시설
변경	-	29	9,261.1	4	4	금곡동 54-4 일원		814.4	814.4	주차장 (정비기반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및 신설에 한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28-1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신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29-3~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29-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라. 기타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함.

마. 관계도서 및 상세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끝.